

□ 2018년도 공무원봉급표

[별표 3] <개정 2018. 1. 18.>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3,877,000	3,490,3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52,300	3,751,0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80,0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126,5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 비고 >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66,600원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호봉 \ 계급 · 직무등급	1급	2급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비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14,400원으로 한다.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411,800	1,785,500	1,448,800
2		2,526,300	1,882,200	1,510,200
3		2,640,900	1,980,500	1,584,300
4		2,756,600	2,079,600	1,659,000
5		2,874,500	2,177,800	1,738,100
6		2,989,600	2,278,100	1,820,100
7		3,101,000	2,379,900	1,901,300
8		3,213,900	2,478,800	1,979,300
9		3,327,800	2,565,400	2,055,500
10		3,443,700	2,650,400	2,130,300
11		3,546,900	2,734,200	2,198,600
12		3,647,200	2,808,900	2,259,100
13		3,736,700	2,884,400	2,323,100
14		3,829,000	2,950,200	2,388,100
15		3,925,400	3,015,900	2,450,500
16		3,998,700	3,084,000	2,510,100
17		4,071,300	3,152,500	2,562,800
18		4,135,900	3,213,800	2,616,700
19		4,204,000	3,271,000	2,671,700
20		4,267,700	3,331,900	2,727,600
21		4,335,800	3,393,700	2,780,300
22		4,400,900	3,448,000	2,834,400
23		4,469,100	3,504,500	2,884,000
24		4,539,300	3,563,800	2,937,000
25		4,607,800	3,618,200	2,985,200
26		4,681,500	3,672,700	3,037,300
27		4,752,800	3,729,800	3,087,300
28		4,822,400	3,787,200	3,131,900
29		4,895,000	3,840,700	3,175,700
30		4,963,300	3,893,900	3,217,000
31		5,033,500	3,946,700	3,255,300
32		5,105,700	3,999,200	3,291,800
33		5,177,200	4,053,000	3,326,300
34		5,248,500	4,104,200	3,360,500
35		5,319,200	4,157,200	3,396,500
36		5,390,100	4,206,300	3,432,000
37		5,461,700	4,255,100	3,467,400
38		5,533,300	4,304,000	3,502,700
39		5,603,500		
40		5,648,8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084,500	3,800,100	3,470,400	3,013,500	2,603,100	2,138,600	1,904,700	1,682,800	1,495,600
2	4,220,400	3,929,600	3,587,000	3,123,800	2,700,600	2,231,100	1,986,100	1,760,100	1,568,300
3	4,359,800	4,060,800	3,706,900	3,235,800	2,801,700	2,326,700	2,072,400	1,841,700	1,645,200
4	4,502,300	4,193,300	3,827,800	3,350,400	2,906,900	2,424,300	2,163,000	1,924,900	1,726,800
5	4,648,200	4,327,500	3,950,600	3,466,600	3,014,800	2,524,700	2,256,800	2,011,400	1,809,000
6	4,795,900	4,462,000	4,074,600	3,583,900	3,124,900	2,628,000	2,352,900	2,100,100	1,893,200
7	4,945,800	4,598,200	4,200,100	3,702,300	3,236,700	2,731,500	2,449,800	2,189,100	1,973,700
8	5,097,100	4,734,300	4,325,900	3,821,300	3,349,900	2,835,400	2,547,100	2,274,500	2,051,300
9	5,250,300	4,871,300	4,452,800	3,940,600	3,463,400	2,939,600	2,639,700	2,356,100	2,125,700
10	5,404,500	5,008,300	4,579,600	4,059,800	3,577,800	3,037,300	2,728,200	2,433,100	2,197,100
11	5,558,400	5,145,800	4,706,500	4,180,100	3,684,500	3,130,000	2,811,600	2,507,900	2,265,400
12	5,717,400	5,288,000	4,838,200	4,293,200	3,787,600	3,221,200	2,893,500	2,580,900	2,333,100
13	5,877,400	5,431,200	4,960,600	4,399,200	3,885,400	3,307,100	2,971,300	2,651,100	2,398,200
14	6,037,800	5,560,700	5,074,100	4,498,000	3,976,700	3,388,200	3,045,700	2,718,000	2,461,200
15	6,177,900	5,680,200	5,178,700	4,591,000	4,062,800	3,466,100	3,116,700	2,782,400	2,521,500
16	6,302,300	5,789,700	5,276,400	4,678,700	4,143,900	3,539,000	3,184,000	2,844,500	2,579,900
17	6,412,700	5,890,600	5,367,100	4,760,200	4,220,100	3,608,700	3,248,500	2,902,500	2,637,000
18	6,511,000	5,982,600	5,451,400	4,836,300	4,292,100	3,674,600	3,310,200	2,958,900	2,690,100
19	6,599,000	6,067,700	5,529,400	4,907,400	4,360,000	3,737,000	3,368,200	3,012,900	2,742,300
20	6,677,900	6,145,400	5,602,400	4,973,800	4,423,500	3,795,800	3,423,600	3,064,400	2,792,100
21	6,750,600	6,216,300	5,670,000	5,035,900	4,483,300	3,852,400	3,476,400	3,113,600	2,839,000
22	6,815,300	6,281,500	5,732,600	5,094,100	4,539,500	3,905,600	3,526,300	3,160,900	2,884,200
23	6,870,000	6,341,100	5,790,400	5,148,800	4,592,600	3,955,500	3,574,400	3,205,800	2,927,000
24		6,389,800	5,844,300	5,200,200	4,642,100	4,003,100	3,620,300	3,249,200	2,968,400
25		6,436,300	5,888,700	5,247,400	4,689,000	4,048,400	3,663,600	3,290,300	3,007,700
26			5,931,000	5,287,300	4,733,100	4,091,000	3,705,100	3,330,300	3,043,200
27			5,970,300	5,324,100	4,769,700	4,131,600	3,740,300	3,363,500	3,073,900
28				5,359,300	4,804,900	4,165,600	3,773,000	3,395,600	3,103,400
29					4,837,200	4,197,500	3,804,700	3,425,900	3,131,900
30					4,868,600	4,229,000	3,834,900	3,455,300	3,159,500
31						4,258,100	3,863,300	3,483,800	3,186,700
32						4,285,600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계급 호봉	1급	2급
1	4,057,400	3,774,900
2	4,192,400	3,903,600
3	4,330,900	4,033,800
4	4,472,500	4,165,500
5	4,617,400	4,298,700
6	4,764,100	4,432,400
7	4,913,100	4,567,700
8	5,063,300	4,702,900
9	5,215,500	4,838,900
10	5,368,700	4,975,100
11	5,521,600	5,111,700
12	5,679,500	5,253,000
13	5,838,400	5,395,200
14	5,997,800	5,523,800
15	6,137,000	5,642,500
16	6,260,500	5,751,300
17	6,370,200	5,851,600
18	6,467,800	5,942,900
19	6,555,300	6,027,500
20	6,633,600	6,104,700
21	6,705,800	6,175,100
22	6,770,100	6,239,800
23	6,824,500	6,299,000
24		6,347,400
25		6,393,600

[별표 5] <개정 2018. 1. 18.>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계급	연구관	연구사
1	2,411,800	1,785,500
2	2,530,000	1,898,000
3	2,648,100	2,010,100
4	2,766,200	2,122,600
5	2,884,000	2,235,200
6	3,054,500	2,345,000
7	3,224,300	2,455,100
8	3,393,900	2,565,300
9	3,562,900	2,674,500
10	3,731,800	2,783,900
11	3,882,100	2,866,200
12	4,032,300	2,948,700
13	4,180,500	3,031,500
14	4,330,100	3,114,100
15	4,478,000	3,196,300
16	4,622,200	3,262,100
17	4,765,600	3,327,000
18	4,909,500	3,392,900
19	5,051,900	3,457,800
20	5,194,500	3,523,200
21	5,313,400	3,586,200
22	5,431,400	3,649,800
23	5,549,800	3,713,100
24	5,667,700	3,776,100
25	5,785,800	3,838,900
26	5,884,600	3,882,500
27	5,984,500	3,925,900
28	6,083,500	3,969,500
29	6,182,100	4,011,800
30	6,281,100	4,055,200
31	6,357,600	4,098,400
32	6,434,400	4,136,200
33		4,174,100
34		4,211,500
35		4,248,900
36		4,283,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호봉	계급	연구관
1		2,395,900
2		2,513,300
3		2,630,600
4		2,747,900
5		2,864,900
6		3,034,300
7		3,202,900
8		3,371,500
9		3,539,300
10		3,707,100
11		3,856,300
12		4,005,600
13		4,152,800
14		4,301,400
15		4,448,300
16		4,591,600
17		4,734,100
18		4,876,900
19		5,018,500
20		5,160,100
21		5,278,200
22		5,395,500
23		5,513,100
24		5,630,200
25		5,747,500
26		5,845,600
27		5,944,900
28		6,043,200
29		6,141,100
30		6,239,500
31		6,315,500
32		6,391,800

[별표 6] <개정 2018. 1. 18.>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411,800	1,591,900
2	2,528,500	1,707,300
3	2,644,700	1,822,400
4	2,761,800	1,937,700
5	2,876,600	2,053,100
6	3,029,800	2,153,000
7	3,182,800	2,253,500
8	3,336,400	2,353,200
9	3,489,000	2,453,000
10	3,640,800	2,552,400
11	3,778,200	2,638,100
12	3,914,500	2,723,700
13	4,051,200	2,808,400
14	4,187,000	2,893,000
15	4,321,800	2,976,500
16	4,440,800	3,051,900
17	4,561,600	3,127,100
18	4,681,400	3,201,500
19	4,800,000	3,275,800
20	4,918,400	3,350,400
21	5,023,800	3,419,400
22	5,129,800	3,489,000
23	5,235,100	3,557,700
24	5,340,400	3,626,600
25	5,445,900	3,694,900
26	5,537,900	3,746,600
27	5,629,500	3,798,800
28	5,721,600	3,851,000
29	5,812,800	3,903,400
30	5,905,400	3,954,400
31	5,967,500	3,999,200
32	6,030,100	4,038,400
33		4,077,700
34		4,116,600
35		4,155,600
36		4,191,900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호 봉	계 급	지 도 관
1		2,395,900
2		2,511,700
3		2,627,200
4		2,743,500
5		2,857,500
6		3,009,700
7		3,161,700
8		3,314,300
9		3,465,900
10		3,616,700
11		3,753,100
12		3,888,600
13		4,024,400
14		4,159,300
15		4,293,200
16		4,411,400
17		4,531,400
18		4,650,400
19		4,768,200
20		4,885,800
21		4,990,600
22		5,095,800
23		5,200,400
24		5,305,100
25		5,409,800
26		5,501,200
27		5,592,200
28		5,683,700
29		5,774,300
30		5,866,200
31		5,928,000
32		5,990,200

[별표 8] <개정 2018. 1. 1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2,859,500	2,662,200	2,480,300	2,306,100	2,140,5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2,967,800	2,766,600	2,581,000	2,404,600	2,235,9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3,080,400	2,874,900	2,684,200	2,505,100	2,334,3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3,197,900	2,987,200	2,788,900	2,608,300	2,434,7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3,318,900	3,102,900	2,895,400	2,711,600	2,538,1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3,442,800	3,221,300	3,006,100	2,815,900	2,641,3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3,570,900	3,341,600	3,117,400	2,919,800	2,745,2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3,699,900	3,464,100	3,231,500	3,024,600	2,849,1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3,830,000	3,586,900	3,345,700	3,129,800	2,953,9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3,960,400	3,710,500	3,460,000	3,235,300	3,059,0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4,091,800	3,833,900	3,574,400	3,341,500	3,157,5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4,216,400	3,944,800	3,678,600	3,443,400	3,252,8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4,332,800	4,048,300	3,775,000	3,538,600	3,343,6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4,440,700	4,146,200	3,867,300	3,628,400	3,429,5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4,541,000	4,237,200	3,952,800	3,713,400	3,510,8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4,634,500	4,323,400	4,034,100	3,794,000	3,587,7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4,720,800	4,403,100	4,110,600	3,869,700	3,660,6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4,800,900	4,478,300	4,183,100	3,941,100	3,729,2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4,875,300	4,548,400	4,251,000	4,008,200	3,793,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4,944,600	4,614,500	4,315,000	4,072,000	3,855,6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5,009,300	4,675,500	4,375,200	4,131,700	3,913,7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5,068,500	4,733,600	4,431,900	4,188,000	3,967,8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5,117,800	4,787,700	4,485,700	4,240,800	4,019,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5,163,800	4,833,100	4,535,600	4,291,100	4,068,3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4,875,500	4,577,800	4,337,900	4,114,9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4,617,800	4,376,900	4,158,0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4,655,900	4,413,900	4,194,5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4,449,700	4,229,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482,500	4,261,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293,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별표 10] <개정 2018. 1. 18.>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3,877,000	3,490,300	3,148,900	2,827,400	2,542,400	2,196,300	1,962,300	1,818,800	1,651,600	1,530,9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937,700	2,639,900	2,290,700	2,054,800	1,900,200	1,728,900	1,603,500
3	4,152,300	3,751,000	3,385,400	3,049,700	2,741,000	2,387,000	2,148,500	1,986,500	1,810,500	1,680,4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164,300	2,846,200	2,486,200	2,244,700	2,077,100	1,893,700	1,762,0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280,500	2,954,100	2,586,800	2,343,300	2,170,900	1,980,200	1,844,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397,800	3,064,200	2,690,100	2,443,000	2,267,000	2,068,900	1,928,4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516,200	3,176,000	2,795,500	2,543,500	2,363,900	2,157,900	2,008,9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635,200	3,289,200	2,901,900	2,644,200	2,461,200	2,243,300	2,086,5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754,500	3,402,700	3,009,200	2,745,300	2,553,800	2,324,900	2,160,9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873,700	3,517,100	3,109,500	2,840,800	2,642,300	2,401,900	2,232,4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994,000	3,623,800	3,204,400	2,930,500	2,725,700	2,476,700	2,300,7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4,107,100	3,726,900	3,296,900	3,018,700	2,807,600	2,549,700	2,368,3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213,100	3,824,700	3,384,300	3,102,600	2,885,400	2,619,900	2,433,4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311,900	3,916,000	3,467,700	3,181,500	2,959,800	2,686,800	2,496,4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404,900	4,002,100	3,546,000	3,257,400	3,030,800	2,751,200	2,556,7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492,600	4,083,200	3,621,200	3,328,500	3,098,100	2,813,300	2,615,1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574,100	4,159,400	3,691,000	3,396,600	3,162,600	2,871,300	2,672,2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650,200	4,231,400	3,758,200	3,461,000	3,224,300	2,927,700	2,725,3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721,300	4,299,300	3,821,200	3,522,100	3,282,300	2,981,700	2,777,5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787,700	4,362,800	3,881,000	3,580,200	3,337,700	3,033,200	2,827,3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849,800	4,422,600	3,937,300	3,635,400	3,390,500	3,082,400	2,874,2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908,000	4,478,800	3,991,700	3,687,700	3,440,400	3,129,700	2,919,4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962,700	4,531,900	4,041,600	3,737,000	3,488,500	3,174,600	2,962,400
24		6,080,000	5,522,800	5,014,100	4,581,400	4,089,800	3,784,400	3,534,400	3,218,000	3,003,600
25		6,126,500	5,567,200	5,061,300	4,628,300	4,135,100	3,829,600	3,577,700	3,259,100	3,042,900
26			5,609,500	5,101,200	4,672,400	4,178,100	3,870,900	3,619,200	3,299,100	3,078,500
27			5,648,800	5,138,000	4,709,000	4,218,300	3,906,300	3,654,400	3,332,300	3,109,100
28				5,173,200	4,744,200	4,252,700	3,940,500	3,687,100	3,364,400	3,138,600
29					4,776,500	4,284,600	3,972,600	3,718,800	3,394,700	3,167,100
30					4,807,900	4,316,000	4,003,000	3,749,000	3,424,100	3,194,800
31						4,344,900	4,031,900	3,777,400	3,452,600	3,221,900
32						4,372,400				

1. 경찰대학생: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호봉 \ 계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별표 11] <개정 2018. 1. 18.>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73,100	21	2,998,100
2	1,620,700	22	3,108,800
3	1,669,100	23	3,218,600
4	1,717,200	24	3,328,500
5	1,765,800	25	3,438,500
6	1,814,300	26	3,548,800
7	1,862,100	27	3,663,900
8	1,909,900	28	3,778,700
9	1,958,400	29	3,898,800
10	2,011,500	30	4,019,300
11	2,063,300	31	4,139,400
12	2,116,400	32	4,259,300
13	2,212,800	33	4,381,100
14	2,309,600	34	4,502,600
15	2,406,200	35	4,624,300
16	2,503,100	36	4,745,400
17	2,598,900	37	4,850,900
18	2,699,100	38	4,956,500
19	2,798,900	39	5,062,300
20	2,898,500	40	5,167,400

비고: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62,600	21	2,978,200
2	1,610,000	22	3,088,200
3	1,658,100	23	3,197,300
4	1,705,800	24	3,306,400
5	1,754,100	25	3,415,700
6	1,802,300	26	3,525,300
7	1,849,700	27	3,639,600
8	1,897,300	28	3,753,700
9	1,945,500	29	3,873,000
10	1,998,100	30	3,992,700
11	2,049,700	31	4,112,000
12	2,102,300	32	4,231,100
13	2,198,200	33	4,352,100
14	2,294,300	34	4,472,700
15	2,390,200	35	4,593,600
16	2,486,500	36	4,714,000
17	2,581,700	37	4,818,700
18	2,681,200	38	4,923,700
19	2,780,300	39	5,028,800
20	2,879,300	40	5,133,100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88,700	21	3,912,900
2	2,051,300	22	4,033,200
3	2,114,300	23	4,190,100
4	2,176,900	24	4,346,500
5	2,240,000	25	4,502,900
6	2,309,000	26	4,659,100
7	2,377,900	27	4,815,300
8	2,447,000	28	4,971,500
9	2,550,800	29	5,090,300
10	2,654,600	30	5,209,400
11	2,758,600	31	5,328,100
12	2,862,000	32	5,446,900
13	2,965,100	33	5,565,900
14	3,068,500		
15	3,189,700		
16	3,310,700		
17	3,431,100		
18	3,551,500		
19	3,672,700		
20	3,792,700		

< 비 고 >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60,1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66,6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009,400원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0,0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2,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76,300	21	3,888,500
2	2,038,500	22	4,008,000
3	2,101,100	23	4,163,900
4	2,163,300	24	4,319,400
5	2,226,000	25	4,474,700
6	2,294,600	26	4,630,000
7	2,363,000	27	4,785,300
8	2,431,800	28	4,940,400
9	2,534,800	29	5,058,500
10	2,638,000	30	5,176,900
11	2,741,400	31	5,294,800
12	2,844,100	32	5,412,900
13	2,946,600	33	5,531,200
14	3,049,400		
15	3,169,800		
16	3,290,000		
17	3,409,600		
18	3,529,400		
19	3,649,800		
20	3,769,000		

< 비고 >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16,0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14,4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956,300원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078,700	4,791,200	3,889,500	3,419,000	2,816,800	2,291,200	1,777,500	1,624,400	2,118,600	2,971,100	2,054,900	1,657,400	1,458,800
2	5,204,200	4,915,700	4,020,300	3,549,700	2,944,500	2,411,500	1,878,300	1,720,100	2,219,300	3,066,100	2,146,000	1,742,600	1,466,800
3	5,329,700	5,040,200	4,151,100	3,680,400	3,072,200	2,531,800	1,979,100	1,815,800	2,320,000	3,161,100	2,237,100	1,827,800	1,474,900
4	5,455,200	5,164,700	4,281,900	3,811,100	3,199,900	2,652,100	2,079,900		2,420,700	3,256,100	2,328,200	1,913,000	1,524,300
5	5,580,700	5,289,200	4,412,700	3,941,800	3,327,600	2,772,400	2,180,700		2,521,400	3,351,100	2,419,300	1,998,200	1,573,700
6	5,706,200	5,413,700	4,543,500	4,072,500	3,455,300	2,892,700	2,281,500		2,622,100	3,446,100	2,510,400	2,083,400	1,623,100
7	5,831,700	5,538,200	4,674,300	4,203,200	3,583,000	3,013,000	2,382,300		2,722,800	3,541,100	2,601,500	2,168,600	1,672,500
8	5,957,200	5,662,700	4,805,100	4,333,900	3,710,700	3,133,300			2,823,500	3,636,100	2,692,600	2,253,800	1,721,900
9	6,082,700	5,787,200	4,935,900	4,464,600	3,838,400	3,253,600			2,924,200	3,731,100	2,783,700	2,339,000	1,771,300
10	6,208,200	5,911,700	5,066,700	4,595,300	3,966,100	3,373,900			3,024,900	3,826,100	2,874,800	2,424,200	1,820,700
11	6,333,700	6,036,200	5,197,500	4,726,000	4,093,800	3,494,200			3,125,600	3,921,100	2,965,900	2,509,400	
12	6,459,200	6,160,700	5,328,300	4,856,700	4,221,500	3,614,500			3,226,300	4,016,100	3,057,000	2,594,600	
13	6,584,700	6,285,200	5,459,100	4,987,400	4,349,200				3,327,000	4,111,100	3,148,100	2,679,800	
14			5,589,900	5,118,100	4,476,900				3,427,700	4,206,100	3,239,200	2,765,000	
15			5,720,700	5,248,800					3,528,400	4,301,100	3,330,300	2,850,200	
16									3,629,100		3,421,400	2,935,400	
17									3,729,800		3,512,500	3,020,600	
18									3,830,500		3,603,600	3,105,800	
19									3,931,200		3,694,700	3,191,000	
20									4,031,900			3,276,200	
21									4,132,600			3,361,400	
22									4,233,300			3,446,600	
23									4,334,000				
24									4,434,700				
25									4,535,400				
26									4,636,100				
27									4,736,800				

< 비고 >

- 1. 대장: 8,009,400원, 중장: 7,866,6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559,0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653,500원, 부사관후보생: 405,7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405,700원
-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256,000원, 2학년 322,100원, 3학년 405,700원
- 6. 병: 이등병 306,100원, 일등병 331,300원, 상등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045,100	4,759,400	3,863,700
2	5,169,800	4,883,100	3,993,600
3	5,294,500	5,006,800	4,123,500
4	5,419,200	5,130,500	4,253,400
5	5,543,900	5,254,200	4,383,300
6	5,668,600	5,377,900	4,513,200
7	5,793,300	5,501,600	4,643,100
8	5,918,000	5,625,300	4,773,000
9	6,042,700	5,749,000	4,902,900
10	6,167,400	5,872,700	5,032,800
11	6,292,100	5,996,400	5,162,700
12	6,416,800	6,120,100	5,292,600
13	6,541,500	6,243,800	5,422,500
14			5,552,400
15			5,682,300

비고 : 대장: 7,956,300원, 중장: 7,814,400원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982,300
15	7,529,500
14	7,078,800
13	6,674,500
12	6,333,400
11	6,168,900
10	5,975,400
9	5,652,000
8	5,266,800
7	4,934,500
6	4,622,800
5	4,321,900
4	4,019,000
3	3,726,300
2	3,434,200
1	3,047,900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3호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929,400
15	7,479,600
14	7,032,000
13	6,630,300
12	6,291,500
11	6,128,100
10	5,935,800
9	5,614,500
8	5,231,900
7	4,901,800
6	4,592,200
5	4,293,300
4	3,992,400
3	3,701,600